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4 호 2023. 1. 26.(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1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2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4회[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8회[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규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1. 20.
2. 점용·사용의 목적 : 공업용수 노후관 갱생 및 정비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946번지 외 2개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49.00m²
 - 2) 계속: 12.00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3. 1. 20. ~ 2023. 12. 31.
 - 2) 계속: 2024. 1. 1. ~ 2028. 5. 31(영구)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5층)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2) 사업주체
 - 가) 성 명: (주)케이엘앤디 대표 이병훈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48, 3층 (주)케이엘앤디
- 3)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3번지 외 60필지

나. 사업개요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주체	(주)케이엘앤디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48, 3층 (주)케이엘앤디	
대지면적	14,790.0㎡ (공동주택 부지)	
건축면적	2,660.9965㎡	
연면적	64,515.3122㎡	
건폐율	17.99%	
용적률	291.15%	
동수(주/부)	4개동 / 2개동	
세대수	397세대	
주택형별	아파트(민영주택)	
사업비	199,330,010,000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01. ~ 2025. 05.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변경신고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동의

4. 승인관련서류: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98	천곡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5-3번지 일원	-	증)19,794	19,794	구역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8	천곡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증) 19,794㎡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794	-	19,794	100.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814	-	18,814	95.1	
	자연녹지지역	980	-	980	4.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2	293	5,004	-	-	-	1	217	3,702	1	76	1,302
중로		2	293	5,004	-	-	-	2	217	3,702	1	76	1,302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 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신설	중로	2	628	17	집산도로	217 (217)	소로3-32	대로2-76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3	488	12	집산도로	76 (76)	중로2-628	중로1-120	일반 도로			노선신설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2-628	· 노선신설 L=217m, B=17m	·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중로3-488	· 노선신설 L=76m, B=12m	·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신설	1	1B	14,790	1	북구 천곡동 525-3번지 일원	14,7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B-1	· 신설 A = 14,790m ²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1B-1	용 도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250% 이하 / 295%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00m(29층)이하
			최저높이	-

■ 용적률완화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계획대상지												
<p>▪ 3-3-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주거지역</th> <th>기준용적률(%)</th> <th>허용용적률(%)</th> </tr> </thead> <tbody> <tr> <td>제1종</td> <td>150</td> <td>150</td> </tr> <tr> <td>제2종</td> <td>200</td> <td>250</td> </tr> <tr> <td>제3종</td> <td>250</td> <td>300</td> </tr> </tbody> </table>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제1종	150	150	제2종	200	250	제3종	250	300	<p>1. 무상귀속 : 2,059.0㎡ 2. 신설 공공시설 : 5,004㎡ - 도로 : 5,004㎡ 3. 완화용적률 = 당해용도지역용적률 + [1.5×가중치× (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용적률)÷실사용부지] = 250 + [1.5×0.88×{(2,059×250) / 14,790}] = 295.94%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300%이하 이므로 최대 허용용적률은 295%이하로 적용</p>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제1종	150	150											
제2종	200	250											
제3종	250	300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	1B-1	·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	중로 2-628호선변
신설	-	1B-1	· 단지 내 비상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	중로 2-628호선변
신설	-	1B-1	· 근린생활시설 주차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동측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	중로 2-628호선변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4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m ²)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023 -1호	울산복구청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2,500	'23. 02. 04. ~ '23. 02. 06.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운영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18호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유형 \ 구간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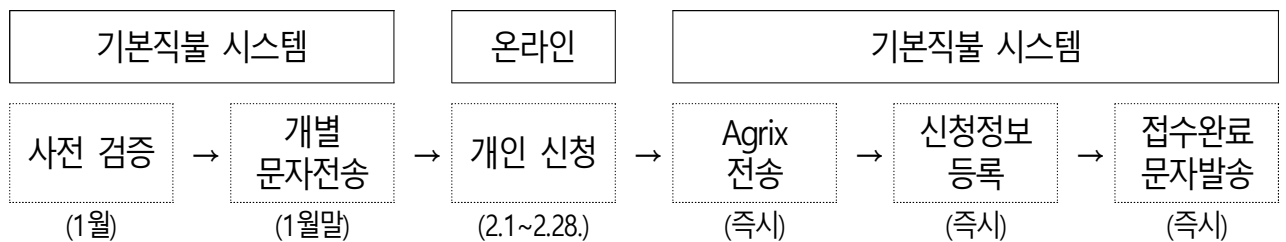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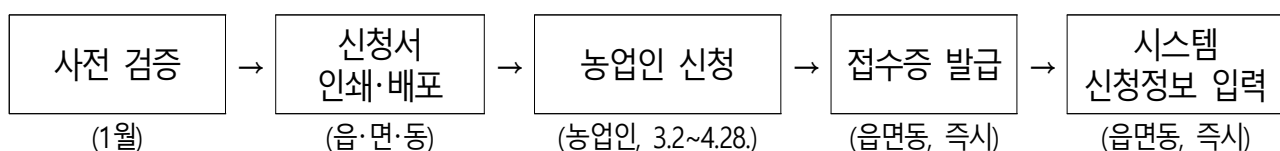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3.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3. 3. 2. ~ 4. 28.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

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 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중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3. 승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

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